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공42-1849	(전화번호 602-9153)	건결규정 조항 건결사항
처리기간	구 결 정		결정
시행일자	80.6.	결결	결정
보존년한			
보조 기관	외경제부장	80.6.10	총무과장
	외경제부과장		기획과장
	외경제부계장		(법무실장)
기안책임자	한석기 80.6.	9장호 조	
경수 참조	각 안 출 조		검열 80.6.10 통제관
제목	외경제부 (A장) 업무공인		
<p>(제1안) 내부결재.</p> <p>1.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(80.5.27)로 개정된, 외경제부 (A장)를, 외경제부 제13조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46조(81.12.10)의 관련 위임 규정의 위기 별첨과 같이 적용한 하위 법령이다.</p> <p>(제2안)</p> <p>외 A 문 안.</p> <p>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(80.5.27)로 개정된, 외경제부 (A장) 적용 승인.</p> <p>2.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(80.5.27)로 개정된, 외경제부 (A장)를, 외경제부 제13조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46조(81.12.10)의 관련 위임 규정의 위기 적용한 하위 법령이므로 O다.</p> <p>3. 본안에서는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46조(81.12.10)의 관련 위임 규정의 위기 적용한 하위 법령이므로 O다.</p> <p>1980. 6.</p>			

(제1안) 내부결재
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
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촉진법 제46조
관련 위임 규정의 위기
적용한 하위 법령이다.

정서
관인
발송

A물특별A장

A. A물 34

구분	A물명	A장명칭	위	A	면적	비고
A물	5대A장	형A장	추방/용 567-4		1354 ^m	
			"	34	242	
			"	37	1677	
			"	26	94	
계					3367 ^m (1016.5 ^m)	

별첨된 3A와 2A (5대A장)

(제 3안)

수 A: A물특별A장

출 조: 5대A장 1과장

과 목: 동 가 보 2.

1. 5대 442 - 37 호 (82.5.27) 의 관련 사항

2. 위대 3호 4대A장 1과 1호 (82.5.27) 로 5대A장

A물 (A장) 확정된 것은 별첨된 3A와 2A 이 확정된 하위 5대A장.

출 조: 2대A물 1매 및 2대 1호.

(제 4안)

수 A: 홍수리 강관 (A물특별A장) 출 조: A물특별A장 (5대A장)

출 조: 홍수리 강관

과 목: 관 (A) 보 가의 의의.

1. 별첨된 3A와 2A 이 5대A장 A물 (A장) 확정된 A물 관 A물에 가제의 의의 하위 게재하여 주시 바랍니다.

가. 게재주요: 2A

나. 게재기명: 5대A장 A물 (A장) 확정된

다. 별 첨: 5대A장 보 1호 2.

총 부: 34호A (1.부)
(제 5안)

주 소: 전무부 장관 부장: 서울특별시청

참 조: 도시계획 과정

제 목: 동건 부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(제 10.5.27)을 개정된 도시계획
수단(A장)에 대하여 작성한 계획서 보고 함이다.

참 부: 34호A본1부 1부
(제 6안)

주 소: 서울특별시청

참 조: A안 라장

제 목: 도시계획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의뢰

1. 양주에나 위치한 도시계획 수단(A장)에 적용한 수정
도시계획 하의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 중앙부에 수정에 대한
결정을 받은 수정에 대한 함이다.

총 부: 34호A본1부 1부

2. 관공제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뢰

(제 4안) (관공제에 관한)

주 소: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
제 목: 동건 부지

1.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수단(A장)에 대하여 작성한
계획서 하의 변경에 관한 중앙부에 함을 함이다

참 부: 34호A본1부 1부 (제 10안)

(제 10안)

주 소: 경부 방화동 567-4호 1부

1. 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수단(A장)에 대한
도시계획 중앙부에 함을 함이다

